

식품·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
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식품·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”을 각각 “식품의약품안전처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确定的한 분류체계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确定的한 분류체계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3조(식품·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 및 관리)	제3조(식품·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 및 관리)	제3조(식품·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 및 관리)		
① <u>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</u> 장은	① <u>식품의약품안전처</u> 장-----	① <u>식품의약품안전처</u> 장-----		
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분류체계	-----	-----		
(이하 이 조에서 “분류체계”라	-----	-----		
한다)를 작성할 때에는 「과학	-----	-----		
기술기본법」 제27조에 따른 국	-----	-----		
가표준분류체계와 연계되도록	-----	-----		
해야 한다.	-----.	-----.		
② <u>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</u> 장은	② <u>식품의약품안전처</u> 장-----	② <u>식품의약품안전처</u> 장-----		
분류체계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	-----	-----		
기관·단체 및 관련 학회 등의	-----	-----		
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6조제1	-----	-----		
항에 따른 식품·의약품규제과	-----	-----		
학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	-----	-----		
류체계를 확정한다.	-----.	-----.		
③ <u>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</u> 장은	③ <u>식품의약품안전처</u> 장-----	③ <u>식품의약품안전처</u> 장-----		
식품·의약품 등의 규제과학이	-----	-----		
나 규제과학혁신 분야에서의 국	-----	-----		
제 동향 및 신기술 출현 등을	-----	-----		
고려하여 분류체계를 수정·보	-----	-----		
완할 수 있다.	-----.	-----.		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정책추진단	
연 락 처	(043) 719 - 1373